

울산광역시북구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282 호 2021. 3. 18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48호[하천 점용(변경)허가 고시 및 공유수면 점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]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49호[하천 점용 (변경)허가 고시]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51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5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341호[공시송달 공고] 6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48호

하천 점용(변경)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(변경)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3월 1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천, 매곡천, 약수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울산광역시장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토지의 점용, 교량설치, 공작물설치(상수관, 오수관, 가설도로)

4. 점용(변경)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신천동 368-1번지 외 11필지

나. 면적

- 일시: 2,466.1m²

- 영구: 4,405.2m²

5. 점용(변경) 허가의 유효기간

당초

- 일시: 2018. 8. 22. ~ 2021. 2. 21.

- 영구: 2021 2. 22. ~ 영구

변경

- 일시: 2018. 8. 22. ~ 2022. 3. 4.

- 영구: 2022. 3. 5. ~ 영구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48호

공유수면 점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, 제20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3월 1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점용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연월일 : 2021. 3. 11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인공구조물 설치(오수관, 공사용 가도)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신천동 745-1번지 외 11필지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가. 면 적 : 일시 630.6m², 영구 21.8m²
나. 기 간 :
 당초 - 일시: 2018. 8. 22. ~ 2021. 2. 21.
 영구: 2021. 2. 22. ~ 2051. 2. 22.
 변경 - 일시: 2018. 8. 22. ~ 2022. 3. 4.
 영구: 2022. 3. 5. ~ 2052. 3. 5.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2018. 8. 22. ~ 2022. 3. 4.
6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울산광역시장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신정1동)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6. 9. 8.>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공고 제2021 - 48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)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 (직인)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울산광역시		
	대표자 (성 명)	울산광역시장	주소	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
소하천명		이화천, 이원천, 갯안앞천, 수성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중산동 1166-1번지 외 6필지		
	면적	일시: 878.4 m ² 영구: 2,856.2m ²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m ²
	기간	당초 - 일시 : 2018. 8. 22. ~ 2021. 2. 21. 영구 : 2021. 2. 22. ~ 영구 변경 - 일시: 2018. 8. 22. ~ 2022. 3. 4. 영구 : 2022. 3. 5. ~ 영구		
	목적 및 사유	인공구조물 설치	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49호

하천 점용 (변경)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3월 1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(주)*성

나. 주소 : 강원도 **군 *월읍 단*로 **번길 13-*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설치(오수관 설치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효문동 820번지

나. 면적 : 11m²

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당초 : 2017. 1. 4. ~ 2021. 3. 4.

변경 : 2017. 1. 4. ~ 2022. 3. 4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51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3월 1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농공단지1길 32-8	달천동 212-10	2021. 3. 18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1. 3. 1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-341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하천구역(명촌천) 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

1. **공고내용:**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**공고기간:** 2021. 3. 18. ~ 2021. 4. 1. (14일간)
3. **공고장소:**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4. **무단점유 현황**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복구 화봉동	1144-33	미상	미상	불법경작	20	
복구 화봉동	1144-25	미상	미상	불법경작	30	
복구 화봉동	1144-21	미상	미상	불법경작	10	
복구 연암동	1262-18	미상	미상	불법경작	50	
복구 연암동	1262-19	미상	미상	불법경작	50	

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2021. 3. 29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「하천법」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